

주식회사 LX인터내셔널 감사위원회 규정

내규번호: 규정-7
입안부서: 법무2팀
제정일: 2004. 03. 16
개정일: 2021. 07. 01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 제2조 (적용 범위)
- 제3조 (직무와 권한)

제2장 구성

- 제4조 (구성)
- 제5조 (임기)
- 제6조 (위원장)

제3장 회의

- 제7조 (소집)
- 제8조 (소집권자)
- 제9조 (소집절차)
- 제10조 (의사의 진행 및 결의방법)
- 제11조 (부의사항)
- 제12조 (이사회 보고)

제13조 (의사록)

제14조 (감사록)

제15조 (전문가의 조력 및 관계인의 출석)

제16조 (사무국)

제4장 감사인

제17조 (감사인의 선임)

제18조 (감사인의 변경)

제19조 (감사인의 해임)

제20조 (전기감사인의 의견진술권)

제21조 (독립성 확보)

제22조 (의견교환)

제23조 (규정의 개정)

부칙

제1조 (시행일)

제·개정 이력

NO.	구분 (제정/부분개정/전면개정)	제·개정 일자	개정 사유 및 내용
1	제정	2004.03.16	- 신규제정
2	개정	2007.02.07	
3	개정	2010.05.06	
4	개정	2012.05.11	
5	개정	2018.11.27	- 주식회사 등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면개정 반영
6	개정	2021.07.01	- 사명 변경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 LX인터내셔널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고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감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서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직무와 권한)

- ①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며, 이를 위하여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②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 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상법상 자회사에 대해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④ 감사위원회는 법령 및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의결한다.
 - ⑤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에게 제출하여 이사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2012.5.11 본항 신설)

제2장 구성

제4조 (구성)

- ① 감사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②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감사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 ③ 감사위원 중 1인 이상은 상법 제542조의11 제2항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이어야 하고,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 위원은 상법 제542조의11 제3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010.5.6 본조 개정)

제5조 (임기)

- ① 감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법령,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당해 위원의 이사 임기 만료시점까지로 한다.
다만 그 임기가 최종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 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 ② 감사위원회 위원은 연임될 수 있다.

제6조 (위원장)

- ①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인의 위원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 ② 위원장의 유고로 인해 그 직무를 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한시적으로 대행한다.

제3장 회의

제7조 (소집)

감사위원회는 분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2010.5.6 본조 개정)

제8조 (소집권자)

- ① 감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그러나, 위원장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6조 제2항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②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히어 감사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한 위원이 감사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9조 (소집절차)

- ① 감사위원회 소집은 회일을 정하고 12시간 전에 각 감사위원회 위원에게 문서 또는 구두로 통고하여야 한다.
- ②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제1항의 절차없이 회의를 열 수 있다.

제10조 (의사의 진행 및 결의방법)

- ①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를 진행하고, 회의의 질서를 유지한다.
- ② 감사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 단, 감사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감사위원이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감사위원은 감사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2010.5.6 본항 개정)
- ③ 감사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 위원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⑤ 상법 제393조의2 제4항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부의사항)

감사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감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감사에 관한 사항

- 상법 제412조의2 소정의 이사의 보고에 따른 조치
-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따른 법률 제10조 소정의 감사인의 통보에 따른 조치
- 자회사의 조사에 관한 사항
-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 (2010.5.6 본목 신설)
- 업무·재산 조사 (2010.5.6 본목 신설)
- 이사와 회사간의 소에 관한 대표 (2010.5.6 본목 신설)
- 소수주주의 이사에 대한 제소 요청시 소 제기 결정 여부 (2010.5.6 본목 신설)
- 회사 재무제표의 검토 (2010.5.6 본목 신설)
- 중요한 회계처리기준 또는 회계추정의 변경시 적정성 및 타당성 검토 (2010.5.6 본목 신설)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2010.5.6 본목 신설)
- 내부감시장치의 가동현황에 대한 평가 (2010.5.6 본목 신설)
- 이사회 소집청구 (2012.5.11 본목 신설)
-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 (2018.11.27 본목 신설)

3. 다른 감사부문에 관한 사항

- 감사인 선임 및 해임의 승인
- 감사인 선정을 위한 검토 (2018.11.27 본목 신설)
- 감사인의 선정 및 변경·해임요청 (2018.11.27 본목 신설)

4.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감사보고서의 작성, 제출 및 주주총회에서의 의견 진술에 관한 사항
-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청구 (2010.5.6 본목 신설)

5. 기타 법령에 정하거나 정관 및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 및 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 (이사회 보고)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이사회에서 감사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
- ②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는 경우 이에 관한 사항
- ③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결과 및 동제도의 관리나 운영에 대한 시정 의견 (2007.2.7 본항 신설)

제12조의 2 (내부회계관리제도)

- ① 대표이사는 매사업년도마다 감사위원회에 내부회계 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사유를 문서로 제출하면서 내부회계관리자가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 ② 감사위원회는 매사업년도마다 대면 회의를 통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정기 총회 개최 1주 전까지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018.11.27 본조 신설)

제13조 (의사록)

- ① 감사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 ② 의사록에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반대하는 사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 ③ 의사록 사본을 회의 후 10일 이내에 각 이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4조 (감사록)

- ① 위원회는 감사를 실시한 경우에 해당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전항의 감사록은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후, 감사위원회가 의결하여야 한다.

제15조 (전문가의 조력 및 관계인의 출석)

- ①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 ② 감사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임직원 및 감사인을 회의에 참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2010.5.6 본항 신설)

제16조 (사무국)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사무국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소집통지, 부의안건의 정리 및 배포, 의사록 작성 및 부의안건의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4장 감사인

제17조 (감사인의 선임)

- ① 회사는 위원회가 선정한 회계법인을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에 회사의 감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대면회의를 개최하여, 별도로 정한 '감사인 선정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검토한 후 감사인을 선정한다. (2018.11.27 본항 개정)
- ② 감사인을 선임하는 때에는 연속하는 매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감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감사인의 감사보수와 감사시간, 감사에 필요한 인력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정하여야 한다. (2018.11.27 본항 개정)
- ④ 회사는 감사인을 선임한 경우에 증권선물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위원회는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제3항에 따라 문서로 정한 '감사인의 감사보수와 감사시간, 감사에 필요한 인력에 관한 사항'이 준수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018.11.27 본항 신설)

제18조 (감사인의 변경)

회사는 선임된 감사인이 사업연도 중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감사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2개월 이내에 새로운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2018.11.27 본문 개정)

1. 감사인인 회계법인이 파산 등의 사유로 해산하는 경우(합병으로 인한 해산의 경우를 제외한다)
2. 감사인인 회계법인이 「공인회계사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경우 (2018.11.27 본호 개정)
3. 감사인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이라 한다) 제9조의2 제5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2018.11.27 본호 개정)
4. 감사인이 외부감사법 제2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치로 해당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018.11.27 본호 개정)
5. 그 밖에 감사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회계감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2018.11.27 본호 신설)

제19조 (감사인의 해임)

① 회사는 감사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 중이라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위원회가 해임 요청한 감사인을 해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감사인을 해임한 후 2개월 이내에 새로운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2018.11.27 본문 개정)

1. 감사인이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감사인이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하게한 경우
 3. 감사인이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압력을 행사한 경우
 4. 외국투자자가 출자한 회사로서 그 출자조건에서 감사인을 한정하고 있는 경우 (2018.11.27 본호 개정)
 5. 지배회사 또는 종속회사가 그 지배·종속의 관계에 있는 회사와 같은 지정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 (2018.11.27 본호 개정)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감사인을 해임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2010.5.6 본조 신설)

제19조의 2 (감사계약의 해지)

- ① 감사인이 「공인회계사법」 제21조 또는 제33조를 위반한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감사인과의 감사계약을 해지하여야 하며, 감사계약을 해지한 후 2개월 이내에 새로운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 ② 감사인은 외부감사법 제16조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에서 정하는 독립성이 훼손된 경우 등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 중이라도 감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③ 감사인은 감사의견과 관련하여 부당한 요구나 압력을 받은 경우 등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 중이라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남은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④ 감사인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감사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018.11.27 본조 신설)

제20조 (전기감사인의 의견진술권)

- ① 회사는 직전사업연도에 당해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행한 감사인(이하 “전기감사인”이라 함) 외의 다른 감사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하거나 제19조에 의하여 전기감사인을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기감사인에게 위원회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② 회사는 전항의 경우 전기감사인에게 새로운 감사인과의 감사계약 체결 2주 전까지 문서 또는 구술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사실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③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임되는 전기감사인이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 1. 전기감사인을 해임한 사유
 - 2. 전기감사인이 진술한 의견
 - 3. 위원회 위원 전원이 제1호 및 제2호의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한 사실 (2018.11.27 본조 개정)

제21조 (독립성 확보)

감사위원회는 감사인과 회사와의 관계에 관련된 주요사항을 비롯하여 외부감사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외부감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적절한 의견을 이사회에 개진할 수 있다. (2010.5.6 본조 신설)

제21조의 2 (부정행위 등의 보고)

- ① 감사위원회는 감사인으로부터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통보 받은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위반사실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시정 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② 감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와 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감사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직무를 수행할 때 대표이사에게 필요한 자료나 정보 및 비용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이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감사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면 감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18.11.27 본조 신설)

제22조 (의견교환)

감사위원회는 감사인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며 감사인과 회사의 내부통제제도 및 회사 재무제표의 정확성 등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2010.5.6 본조 신설)

제23조 (규정의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3월 16일로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2월 7일로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5월 6일로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5월 11일로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1월 27일로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7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주식회사 LX인터내셔널 사외이사 후보추천 위원회 규정

내규번호: 규정-22
입안부서: 법무2팀
제정일 : 2011. 03. 11
개정일 : 2021. 07. 01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 제2조 (적용 범위)
- 제3조 (권한)

제2장 구성

- 제4조 (구성)
- 제5조 (위원장)

제3장 회의

- 제6조 (소집권자)
- 제7조 (소집절차)
- 제8조 (결의방법)
- 제9조 (부의사항)

제10조 (관계인의 의견청취)

- 제11조 (의사록)
- 제12조 (규정의 개정)

부칙

- 제1조 (시행일)
-

제·개정 이력

[illegible]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 LX인터내셔널 사외이사 후보추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서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권한)

- ① 위원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권을 가진다.
- ② 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할 자를 결정함에 있어 상법 제542조의6 제2항에 따른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주주총회일의 6주전에 추천한 후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제2장 구성

제4조 (구성)

- ①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해임한다.
- ②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2012.5.11 본항 개정)
- ③ 위원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경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자나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는 사외이사를 제외하는 등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위원의 임기는 취임 후 1년 내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2019.3.15 본항 신설)

제5조 (위원장)

- ① 위원장은 사내이사 또는 기타 비상무이사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2012.5.11 본항 개정)
-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시 의장이 된다.
- ③ 위원장의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장 회의

제6조 (소집권자)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그러나, 위원장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5조 제3항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②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7조 (소집절차)

- ① 위원회 소집은 회일을 정하고 적어도 12시간 전에 각 위원회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제1항의 절차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

제8조 (결의방법)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로 한다. 단,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9조 (부의사항)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사외이사후보의 추천
- ② 기타 사외이사후보 추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 (관계인의 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1조 (의사록)

-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 ② 의사록에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반대하는 사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제12조 (규정의 개정)

이 규정의 개정과 폐지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주식회사 LX인터내셔널 ESG위원회 규정

내규번호: 규정-
입안부서: 법무2팀
제 정 일: 2022. 07. 29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 제2조 (적용 범위)
- 제3조 (권한)

제2장 구성

- 제4조 (구성 및 임기)
- 제5조 (위원장)

제3장 회의

- 제6조 (소집)
- 제7조 (소집권자 및 소집절차)
- 제8조 (의사진행 및 결의방법)

제9조 (관계인의 출석 등)

- 제10조 (부의사항)
- 제11조 (의사록)
- 제12조 (지원부서)
- 제13조 (규정의 개정)

부칙

- 제1조 (시행일)

제·개정 이력

No.	구분 (제정/부분개정/전면개정)	제·개정 일자	개정 사유 및 내용
1	제정	2022. 07. 29	- 신규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 LX인터내셔널 ESG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권한)

- ① 위원회는 회사가 환경 및 사회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확립하여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제10조에 열거된 사항을 의결한다.
- ② 위원회는 의결하거나 보고 받은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 보고할 수 있다.

제2장 구성

제4조 (구성 및 임기)

- ①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이사회 결의로 선임 및 해임한다.
- ②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그 중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한다.
- ③ 위원의 임기는 이사회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이사의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
- ④ 위원이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2항의 위원 수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이사회에서 위원회의 구성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에서 결원 충족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이후에 최초로 소집되는 이사회에서 위원회의 구성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 5 조 (위원장)

- ① 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을 선정한다.
- ② 위원장의 유고로 인해 그 직무를 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한시적으로 대행한다.
-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 별로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

제3장 회의

제 6 조 (소집)

위원회는 반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제 7 조 (소집권자 및 소집절차)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히어 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회의 일시 및 장소를 정하고 12시간 전에 각 위원 및 참석대상자에게 서면, 전자문서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소집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

제 8 조 (의사진행 및 결의방법)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를 진행하고 회의의 질서를 유지한다.
- ②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
- ③ 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④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 9 조 (관계인의 출석 등)

- ①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영진, 관련 업무 담당 임원 등을 회의에 참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사 관련 부서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진술 청취, 현장 실사 등 필요한 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 전문가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제 10 조 (부의사항)

- ①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ESG 경영을 위한 기본 정책 및 전략 등의 수립
 - 2. ESG 중장기 목표의 설정
 - 3. 상법상 회사의 최대주주, 그의 특수관계인 및 회사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중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
 - 가. 단일 거래규모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의 1,000분의 5 이상인 경우
 - 나. 연간 거래규모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의 1,000분의 25 이상인 경우
 -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사익편취 규제)에 해당하는 대상과의 거래로서 거래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
 - 5. 법령상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내부거래 관련 사항
 - 6.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을 받거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② 위원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ESG 경영 활동에 대한 계획 및 이행 성과
 - 2. ESG 관련 중대한 리스크 발생 및 대응에 관련된 사항
 - 3. 이사회에서 한도 승인을 받은 내부거래의 집행 내역에 관한 사항
 - 4.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 11 조 (의사록)

-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과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 4 장 보 칙

제 12 조 (지원부서)

-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보좌하고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부서를 둘 수 있다.
- ② 지원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 1. 주요 ESG 중장기 목표 및 관리 지표 설정 지원
 - 2. ESG 활동 평가 및 성과 관리 지원
 - 3. ESG 관련 대외 Communication
 - 4. 위원회 소집통지, 부의 안건의 준비 및 배포, 의사록 작성 및 부의 안건의 사후관리 등
 - 5. 위원회 사무 전반에 대한 실무적 지원

제 13 조 (규정의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7월 29일로부터 시행한다.